

■■■■■■ 목 차 ■■■■■■

<input type="checkbox"/>	예산총칙	5
<input type="checkbox"/>	회계별 예산규모	9
<input type="checkbox"/>	세입총괄표	13
<input type="checkbox"/>	세출총괄표	23
	▶ 기능별 / 25	
	▶ 조직별 / 31	
	▶ 성질별 / 41	
	▶ 총액인건비 / 54	
<input type="checkbox"/>	세입·세출예산서	57
	▶ 세입예산서 / 59	
	▶ 세출예산서 / 65	
<input type="checkbox"/>	채무부담행위조서	97
<input type="checkbox"/>	계속비사업조서	101
<input type="checkbox"/>	세입예산사업명세서	109
	▶ 일반회계 / 111	
	▶ 기타특별회계 / 145	
	▶ 공기업특별회계 / 153	
<input type="checkbox"/>	부서별 성과계획 및 세출예산사업명세서 ·	157
	▶ 성과계획서 총괄표 / 159	
	※ 부서별 목차 (일반+기타특별회계) 별도 참고	
<input type="checkbox"/>	공기업특별회계	1077
	▶ 지역개발기금 / 1077	

※ 부서별 목차 (일반+기타특별회계)

▶ 대변인실 167	에너지자원과 / 587
▶ 글로벌사업단 177	자연환경연구사업소 / 595
▶ 감사관실 191	산림개발연구원(지원포함) / 604
▶ 기획조정실 199	▶ 경제진흥국 635
기획관실 / 201	경제정책과 / 637
예산담당관실 / 211	기업지원과 / 649
법무통계담당관실 / 216	투자유치과 / 659
정보화담당관실 / 221	투자기반조성과 / 663
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/ 231	전략산업과 / 671
서울사무소 / 235	자원개발과 / 679
▶ 자치행정국 241	▶ 건설방재국 683
총무과 / 243	지역도시과 / 685
자치정책과 / 261	건축주택과 / 691
세정과 / 271	토지자원과 / 697
회계과 / 275	도로철도교통과 / 702
비상기획과 / 279	방재담당관실 / 713
▶ 문화관광체육국 285	도로관리사업소(지소포함) / 725
관광정책과 / 287	▶ 동계올림픽추진본부 751
관광마케팅과 / 296	▶ 소방본부 765
문화예술과 / 305	소방행정과 / 767
체육진흥과 / 322	방호구조과 / 776
국제관광정보센터 / 333	종합상황실 / 784
디엠제트박물관 / 339	소방학교 / 792
▶ 보건복지여성국 345	소방서(14개) / 798
복지정책과 / 347	▶ 의회사무처 857
경로장애인과 / 370	▶ 농업기술원 871
여성청소년가족과 / 389	농업기술원 / 873
보건정책과 / 412	농식품연구소 / 919
식품의약과 / 431	옥수수연구소 / 925
여성가족연구원 / 440	특화작물연구소 / 932
▶ 농정국 451	인삼약초연구소 / 941
농어촌정책과 / 453	미래농업교육원 / 948
친환경농업과 / 464	▶ 강원도립대학 959
농식품유통과 / 476	▶ 환동해본부 975
축산진흥과 / 484	기획총괄과 / 977
농산물원종장 / 494	수산정책과 / 984
감자종자진흥원 / 500	어업지원과 / 994
축산기술연구센터 / 508	해양항만과 / 1001
가축위생시험소(지소포함) / 515	수산자원연구원 / 1008
▶ 녹색자원국 539	수산기술지원센터 / 1015
환경정책과 / 541	민물고기자원센터 / 1025
맑은물보전과 / 558	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/ 1032
산림자원과 / 567	▶ 인재개발원 1039
산림소득과 / 576	▶ 보건환경연구원 1053

예 산 총 칙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1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총 계	3,717,082,420	111,512,473
일 반 회 계	3,259,300,000	97,779,000
특 별 회 계	457,782,420	13,733,473
공기업특별회계(지역개발기금)	202,300,000	6,069,000
기 타 특 별 회 계	255,482,420	7,664,473
· 강 원 도 립 대 학 운 영	9,221,420	276,643
·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	233,800,000	7,014,000
· 학 교 용 지 부 담 금	12,461,000	373,83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(명시이월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,659,346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1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- (1) 공무원 총액인건비
- (2) 차입금 원리금상환
- (3)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배상금, 법정전출금
- (4) 재해대책 및 복구비